

방위지원위원회규정

제 1 조 (명칭) 본 위원회는 경희대학교 방위지원위원회라고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본 위원회는 본교 직장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그 조직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직장 예비군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의결사항) 본 위원회는 전조(前條)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교육훈련 효과 증진대책
2. 조직활성화 및 사기 대책
3. 예비군 지휘관의 추천에 관한 사항
4. 기타 예비군 업무의 발전적인 사항

제 4 조 (조직) 본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장 : 1명
2. 위원 : 20인 이내
3. 간사 : 1명

제 5 조 (임무) 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보하되,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은 기획관리실장, 학·처장, 학군단장 그리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내간부로 하고 방위지원사항을 의결한다.
③ 간사는 예비군 지휘관이 수행하며, 회칙과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록, 유지하고 회무를 담당한다.

제 6 조 (회기) 본 위원회의 회기는 다음과 같다.

1. 정례회의 : 매분기 1회
2. 임시회의 : 중요사안 발생시

제 7 조 (회의소집)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8 조 (의결)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